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36077(본소), 2019나36473(반소) 판결
[청구이의 · 공사대금]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36077(본소), 2019나36473(반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24156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서국화, 차승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철

변론 종결 2020. 10. 30.

판결 선고 2020. 12. 11.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24156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8년 제122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3,155,32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나머지 청구이의 부분을 기각한다.

다. 이 법원이 2019카정512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7. 11.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다.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8년 제122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77,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금전지급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1)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D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시작일로부터 4개월, 공사대금은 3억 9,000만 원(준공 후 4층 확장공사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특약으로 "○ 원고는 공사준공 후 입주전세원금으로 공사비를 (대출금 상환에 앞서) 우선 지불하며, 전세계약시 계약서를 피고에게 오픈 통보하여 공사비 지급시점을 통보, 협의한다. ○ 공사비 완불시점은 준공 후 50일 이내로 하며 이후의 미불금액은 월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도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 2017. 3. 29. 원고에게 '2017. 4. 30.까지 준공 접수를 완료하며, 2017. 5. 15.부터 입주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4층 확장 및 잔여 총공사는 2017. 5. 25.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의 확인증(갑 제18호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7. 7. 18.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다. 이후 피고는 당초 예정된 '준공 후의 4층 확장 공사'를 계속 지체하여 원고는 2017. 9. 4. 이 사건 주택의 4층에 입주할 수 있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2017. 3. 29.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실제 위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람은 피고의 모친 F인데, 위 차용금의 채권자가 피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당일 불상기간 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위 돈이 1개월분 선이자에 한정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2018. 2. 23.에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18. 7. 19.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100,28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7.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C합동법률사무소에 촉탁하여 증서 2018년 제1224호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바. 이후 2018. 9. 10.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청구금액 100,280,000원)으로 하여 2018.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주택 내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8. 11. 14.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5, 6, 7, 12, 14, 18,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채권의 발생 및 내용

가.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채권)

(1)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의 원본으로 70,280,000원(= 100,280,000원 - 위 1의 바.항의 30,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19. 2. 8.자 답변서 및 원고의 2020. 9. 14.자 준비서면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어음금 채권에 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약정이 있었고, 원고 또한 제1심에서부터 위와 같은 약정이자의 존재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액이 특정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의 잔존 원본 9,500만 원(= 1억 2,000만 원 - 위 1.의 라.항의 2,500만 원)에 피고의 요구에 따른 연 8%의 비율에 의한 8개월간 이자 명목의 금액에 비용을 더하여 100,280,000원으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차용금 내지 어음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고정적인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존재를 자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차용 당일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어음금액을 특정함에 있어서 이자 명목의 금액이 가산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새롭게 발행된 이 사건 어음금에 대하여도 연 25% 또는 다른 비율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70,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가 일람출급인 이 사건 어음이 지급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1의 사.항 기재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보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내지 어음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대로 공사 완료 후 전세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이 사건 어음금의 원인관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위 1항의 기초사실과 아래 3의 나.항에서의 인정사실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완불 기한을 '준공 후 50일 이내'로 정하였고, 단지 '전세입주원금'으로 지불한다는 약정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은 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즉시 차질 없이 피고에게 우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임을 강조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보증금 수입이 발생할 것을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조건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이 점은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4호증의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직후인 2017년 9월 말경에는 피고가 4층 확장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예정된 일응의 전체 공정을 완료하였고 다만 미시공 또는 하자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로서의 의미가 있는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보가 원고에게 송달된 시점에는 이미 위 2017년 9월 이후 5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사건 반소의 소구채권)

(1)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4층 확장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전체 공정을 늦어도 2017년 9월 말경에는 완료하였고 이후 50일이 경과한 이상,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위 50일 경과 다음날인 2017. 1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점을 피고의 공사완료 시점으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의 공사 완료 이전이라도 기성고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채권의 발생 및 내용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시공상 하자 및 공사 미완성으로 인한 보수비용 등 45,210,000원 상당의 손해, ②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민원합의금, 종전 임차 건물(학원 운영 및 주거지로 이용)의 임대인에게 지출한 차임 및 관리비, 이삿짐 컨테이너 보관료,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대출받았다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 수입을 얻지 못함에 따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 부담하게 된 이자 등 60,917,861원의 손해, ③ 피고의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신 지출한 7,331,960원의 손해, ④ 지체상금 20,952,000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0.5/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금액임), 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모두 합한 139,411,821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부터 제1심을 거쳐 당심 항소이유서 제출시까지 세부적인 금액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을 뿐 일관되게 위 각 항목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각 채권에서 공제 내지 위 채권과 상계를 하고도 원고의 채권이 일정 금액 더 많이 남아 있다고만 주장하다가, 당심 2019.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종전 주장과 같은 공제 내지 상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총 채권 금액을 160,077,821원으로 하여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추가하였고, 이후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2020. 9.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채권 금액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나. 인정하는 부분

(1)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갑 제16, 17, 21, 22, 28, 29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4층 확장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준공 후에도 건물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역 및 도면에 따르지 아니한 미시공 또는 오시공의 하자가 있어 그 보수공사를 위해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앞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 중 피고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손해액이 합계 45,21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감정결과를 배척하여 위 손해액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공사지연으로 인한 일부 재산상 손해배상 채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시작일로부터 4개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작일은 위 계약 체결일인 2016. 11. 23.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7. 3. 31.경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이를 도과함은 물론 원고에 대하여 다시 약정한 준공기한도 계속 준수하지 못한 끝에 원고가 2017. 9. 4.이 되어서야 이 사건 주택 4층에 입주할 수 있었던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장기화 및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는 민원합의금 320만 원,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학원 건물에서 이사를 하지 못하여 계속 지불한 차임 및 관리비 3,637,260원, 이사짐 컨테이너 보관료 3,077,419원을 합한 9,914,679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손해액은 피고의 위 준공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채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약정한 공사기한을 지키지 못함은 물론, 4층 확장

공사를 포함하여 2017. 5. 25.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정도 4개월 이상 지연하여 이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축 건물로의 이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힌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10%를 넘는 금액 상당의 미시공·하자로 인한 손해를 발생시킨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따로 지체상금 약정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공사 수급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피고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 금액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2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배척하는 부분

(1) 공사지연으로 인한 일부 재산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지연 및 하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수입을 얻을 수가 없어, 공사기간 중 대출받았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월 4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계속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 14, 15,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출이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자보수보증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3호증)에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제24조에서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 도급인에게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문언에는 하자보수 보증금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자보수 보증금률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의 규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피고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원고가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아나가 살피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지체상금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제25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사인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유추적용해야 할 법률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쌍방의 채권의 정산

가. 위 3항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합계액은 57,124,679원(= 45,210,000원 + 9,914,679원 + 2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제기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원고의 위 채권액은 위 2항에서 인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권 70,280,000원 및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5,500만 원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민법 제499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의하여 상계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이후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서 먼저 공제 내지 상계를 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과 상계하는 계산방법을 취하고 있어, 이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상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민법 제476조 제1항의 규정(지정변제충당)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계산방식을 취한 것은 자신의 채권으로 피고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고도 남는 것이 더 많다는 전제에서 어느 방식을 취하든 같은 계산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이 원고의 최초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본소장 부분이 2018. 12.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 때는 피고의 각 채권이 모두 이행기(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2018. 11. 14.,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2017. 11. 19.)가 도래한 후이므로,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채권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은 피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에 상계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늦어도 위 2018. 11. 14.경에는 양 채권이 모두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양 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위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피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 13,155,321원(= 70,280,000원 - 57,124,679원)이 남게 된다.

라. 한편,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상계되는 금액 없이 그대로 남게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우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나머지 어음금 13,155,32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청구이의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또한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월 10%)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원고의 본소청구 중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그 청구보다 앞선 상계권 행사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애초부터 인정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최성배

판사안동범

판사허명욱

1)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가 됨으로써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